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78호 2025년 10월 27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7호)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8호) 8
- 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10호) 15
- 서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11호) 23

■ 공 고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98호) 26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출석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99호) 32
- 2025년 경상북도 민원만족도 조사(하반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2호) 38
-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4호) 40
-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6호) 43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9호) 130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0호) 199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분할합병)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1호) 200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2호) 201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강 클린코리아]
(경주시 고시 제2025-217호) 203
-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270호) 205
- 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144호) 207
-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덕군 고시 제2025-149호) 209

■ 공 고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락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5-2972호) 218
- 의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공고 제2025-1574호) 241
-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5-828호) 244

기 타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248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7호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기산리 일원
- 수혜면적 : 55.2ha
- 사업계획개요
 - 배수장 : 신설 1개소($Q=8.0\text{m}^3/\text{s}$)
 - 수중축류펌프: 170kw $\times$ 1200mm $\times$ 2대, 75kw $\times$ 800mm $\times$ 2대
 - 매 립: 7.4ha(18,943 m^3)
 - 건축면적: 195.48 m^2 (지상1층 높이 5.7m, 건폐율 3.37%)
- 부대공사 1식

3. 사업비소요액 : 11,586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2024. ~ 2028. 12.

5.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1%(4.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6%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7. 기 타 : 관련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054-850-574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읍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총계			14필지		55,304	14,734						
1	안동	풍천	신성	산94	제	3,070	367	국(국토교 통부)					
2	안동	풍천	신성	산94-1	임	5,657	350	국(국토교 통부)					
3	안동	풍천	신성	1299-39	전	721	104	국(국토해 양부)					
4	안동	풍천	신성	1299-40	전	659	659	국(국토해 양부)					
5	안동	풍천	신성	1299-16	제	10,798	1,550	국(국토교 통부)					
6	안동	풍천	신성	산93-4	제	274	199	국(환경부)					
7	안동	풍천	신성	산93-6	임	513	513	국(국토해 양부)					
8	안동	풍천	신성	710	도	1,425	37	국(농림축 산식품부)					
9	안동	풍천	신성	638-8	구	25	25	국(국토해 양부)					
10	안동	풍천	신성	553-1	구	11,427	2,34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안동	풍천	신성	산93-5	임	328	154	한국농어촌 공사					
12	안동	풍천	신성	1299-33	전	1,489	1,489	조선자 외 2인	경북 안동시 감나무2길 37-17				
13	안동	풍천	신성	1299-45	전	4,310	4,310	조선자 외 2인	경북 안동시 감나무2길 37-17				
14	안동	풍천	신성	1299-43	전	14,608	2,636	조동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00, 107동 1001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8호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가. 관련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상문화유산

연번	시군	종별	국가유산명	소재지	비고
1	고령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5번지 일원	
2	성주	기념물	성주 법전리 사지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162	

다. 고시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마.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2. 연락처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880-3168 / 팩스 :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2) 고령군 문화유산과

- 전화 : 054-950-6773 / 팩스 : 054-950-6659
- 주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8
- 홈페이지 : www.gorye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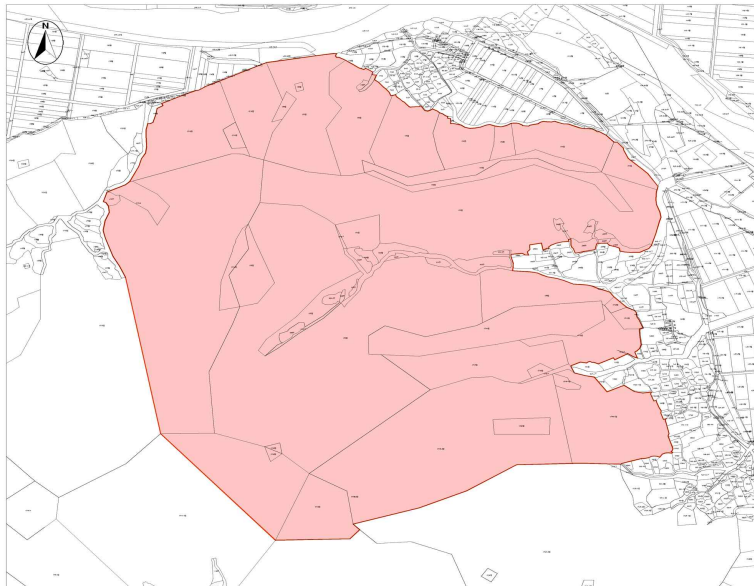
3) 성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 054-930-6793 / 팩스 : 054-931-8384
- 주소 : (우 3928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홈페이지 : www.sj.go.kr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끝.

○ 붙임1.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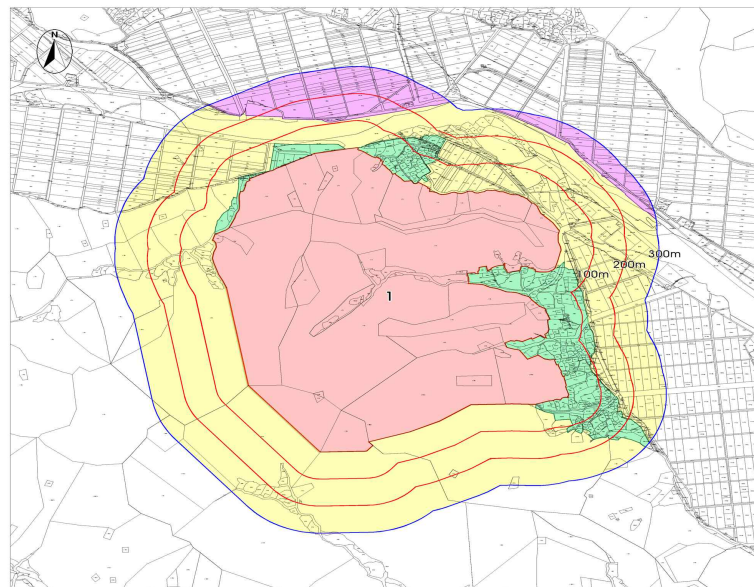
· 지정도면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의하여 참고승조본 실행여사가 바라며, 벽적 외 타승조의 사용은 금합니다.

경상북도 기념물
고령 본관리 고분군
高靈 本館里 古墳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6 외
범례
국가유산
연속지적
축척 1 : 5,000

· 역사문화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의하여 참고승조본 실행여사가 바라며, 벽적 외 타승조의 사용은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대성문화유산

1. 고령 본관리 고분군(경상북도 기념물)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6 외

국가유산구역

 국가유산

구역별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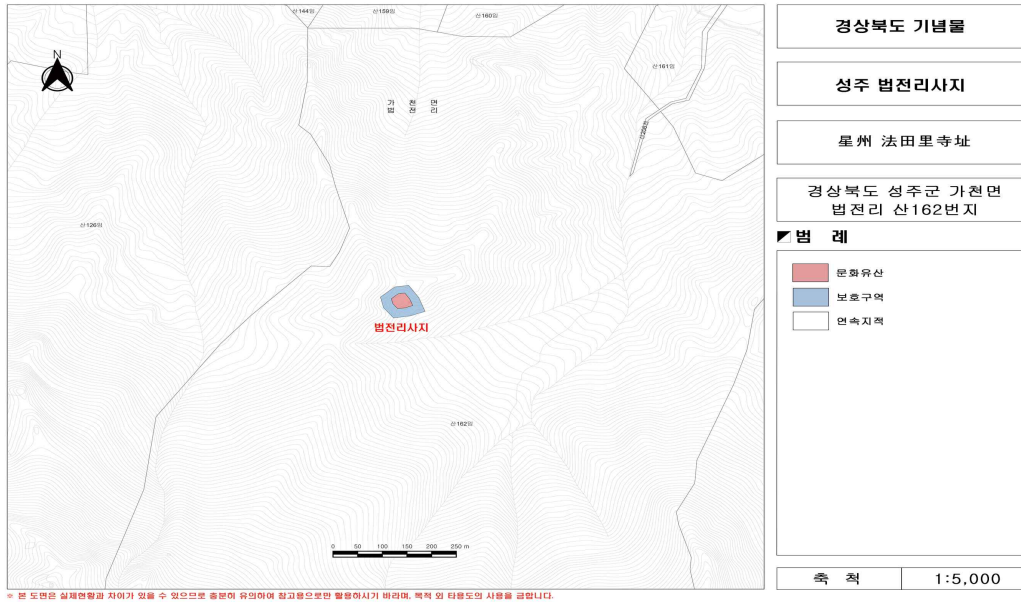
구분	항지명	허용기준	비고
1구역	●계열 권도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고령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기준 (별도 내역서 참조)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높이는 2.0m이고, 3.0m 이하의 경우, 방화벽 등 추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사면의 최소 경사는 1:1.5 이상이어야 함
-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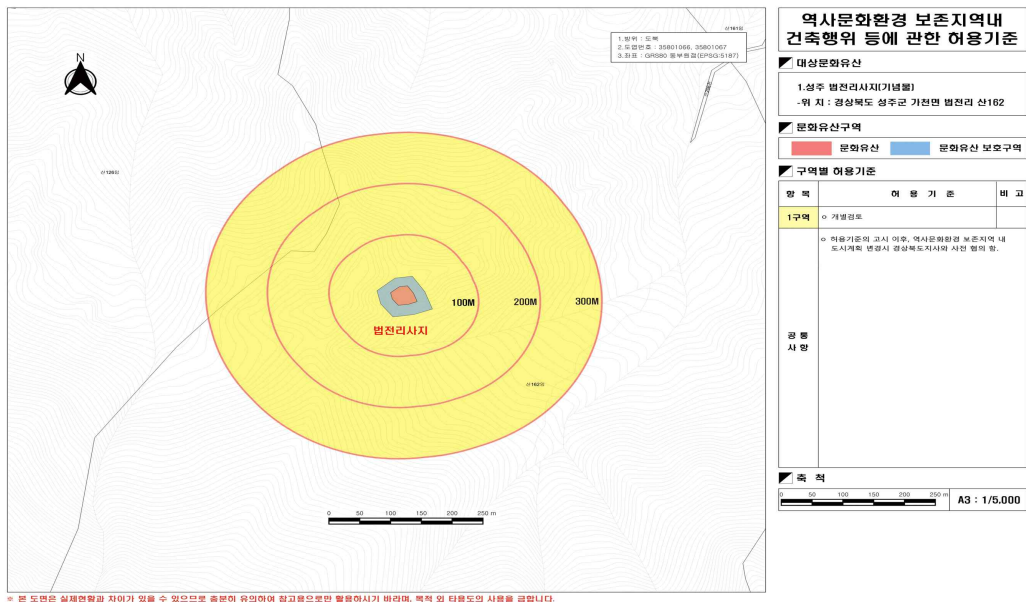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고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붙임2. 기념물 「성주 법전리 사지」

· 지정도면



· 역사문화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검토		
공통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 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5-410호

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거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입토지의 세목(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경지 침수방지로 농경지이용율 증대와 영농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하리리 일원

나. 수혜면적 : 63.9ha

다. 사업계획개요

- 배 수 장 : 1개소 ($Q=7.5\text{m}^3/\text{s}$)

- 매 립 : 1.5ha

3. 지형도면

시·군	사업명	위 치		고시면적 (㎡)	비고
		기 점	종 점		
안동시	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190-95답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409-3구	12,601	

4. 사업비소요액 : 7,406백만원

5. 사업 예정기간 : 2023. ~ 2027. 12. 31.

6.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6%(4.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9%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

10.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054-850-5744)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40,488	12,612					36,836	12,601							
안교 지구																				
1	안동	풍산 안교	928-2	임	10	6		국(국토 교통부)				10	6		국(국토 교통부)					
2	안동	풍산 안교	929-1	천	809	92		국(국토 교통부)				809	92		국(국토 교통부)					
3	안동	풍산 안교	935-1	천	63	36		국 (채무부)				63	36		국 (채무부)					
4	안동	풍산 안교	935-2	전	182	2		국 (채무부)				182	2		국 (채무부)					
5	안동	풍산 안교	936-3	제	241	145		국 (환경부)				241	145		국 (환경부)					
6	안동	풍산 안교	936-4	천	79	68		국(국토 교통부)				79	68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	안동	풍산	안교	937-4	천	159	159	김택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195	937-4	천	159	159	김택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 길24, 105동1002호 (내동,월드 메르디앙 웨스턴에비뉴)			
8	안동	풍산	안교	937-5	답	7	7	김택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195	937-5	답	7	7	김택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 길24, 105동1002호 (내동,월드 메르디앙웨 스턴에비뉴)			
9	안동	풍산	안교	937-6	제	26	26	김택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195	937-6	제	26	26	김택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128번 길24, 105동1002호 (내동,월드 메르디앙웨 스턴에비뉴)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0	안동	풍산 안교	938-4	답	7	7	김영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제골길 27	938-4	답	7	7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11	안동	풍산 안교	1190-86	답	5,851	2,210	서지예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07-2	1190-191	답	2,199	2,199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분할 측량
12	안동	풍산 안교	1190-90	답	1,147	1,147	김영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제골길 27	1190-90	답	1,147	1,147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13	안동	풍산 안교	1190-92	답	1,451	1,451	김영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제골길 27	1190-92	답	1,451	1,451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시,군,읍,면,리,동																		
14	안동	풍산	안교	1190-93	답	724	724	김영희	구범모	경상북도 안동시 합천1길,64-6, 1동305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1190-93	답	724	724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경상북도 안동시 합천1길,64-6, 1동305호 (송현동, 주공아파트)									
15	안동	풍산	안교	1190-95	답	1,187	747	한국농 어촌공사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190-95	답	1,187	747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6	안동	풍산	안교	1190-96	답	1,217	1,217	한국농어 촌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190-96	답	1,217	1,217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7	안동	풍산	안교	1190-97	답	684	684	김영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제골길 27	1190-97	답	684	684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면적 (㎡)	폐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18	안동	풍산	안교	1190-98	답	961	961	김영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계골길 27	구범모				1190-98	답	961	961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19				1190-99	답	804	804	서성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805					1190-99	답	804	804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20				1190-129	답	218	218	박영훈	안동군 임동면 사의동 664					1190-129	답	218	218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소유자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1				1190-176	제	704	480	국(국토 교통부)		1190-176	제	704	480	국(국토 교통부)						
22				1190-177	제	569	399	국(국토 교통부)		1190-177	제	569	399	국(국토 교통부)						
23				1190-178	제	26	26	국(국토 교통부)		1190-178	제	26	26	국(국토 교통부)						
24				1190-181	답	20	20	국(국토 교통부)		1190-181	답	20	20	국(국토 교통부)						
25				1190-182	답	143	143	국(국토 교통부)		1190-182	답	143	143	국(국토 교통부)						
26				1190-183	답	175	175	국(국토 교통부)		1190-183	답	175	175	국(국토 교통부)						
27				1397-9	도	7,990	98	국(국토 교통부)		1397-9	도	7,990	98	국(국토 교통부)						
28				1405-340	구	13,695	216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05-340	구	13,695	216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29				1405-352	구	579	154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05-352	구	579	154	한국농 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30				1409-3	구	760	190	국(농림 축산부)		1409-3	구	760	190	국(농림 축산부)						

경상북도 고시 제2025-411호

서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서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배수장 3개소의 제진기 및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여 홍수 대응능력 강화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외 2개리 일원
- 수혜면적 : 178.6ha
- 사업개요
 - 로터리식 제진기 설치(3개소)
 - 이중화선로 전기공사(3개소)

3. 사업비소요액 : 3,489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5.10. ~ 2028. 12. 31.

5. 사업 효과 : 침수피해 방지, 시설물안전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33)

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가온건설산업	안○현	경북-주택2021-0035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금린	정○용	경북-주택2023-0006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나경건설(주)	석○진	경북-주택2021-0026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더라운	정○현	경북-주택2020-0021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미래하우테크	이○리 외 1	경북-주택2009-0008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바른	조○	경북-주택2022-0022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세주건설	성○관	경북-주택2015-0043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시형토건(주)	손○연	경북-대지2020-0024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유성건설	김○형 외 1	경북-주택2000-0014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제이에스종합건설	구○교	경북-주택2022-0004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영주택	천○동	경북-주택2020-0019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한창디앤씨	한○현	경북-대지2019-0002	경고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거산개발	안○호	경북-대지2022-0020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도시개발	최○주	경북-주택2019-000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도시의꿈	장○수	경북-주택2021-002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동신종합건설(주)	신○근	경북-주택2006-00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서진건설	이○영	경북-주택2018-0010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세주개발	손○주	경북-주택2017-0014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경운건설	김○도	경북-주대2019-0017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굿타임종합토건(주)	조○현	경북-주택1999-001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나훈종합건설	김○중	경북-주택2011-0040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대성건설	이○대	경북-주택1999-000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대원홀딩스	백○옥	경북-주택2016-0021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덕흥종합건설(주)	김○택	경북-주택1995-000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도시건설(주)	차○섭	경북-주대2002-001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주)동영건설	천○성	경북-주택2004-0018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동참	이○형	경북-주택2008-000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로얄(주)	조○수	경북-주대1998-000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메이저산업(주)	황○윤	경북-주택2007-002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미르개발(주)	정○영	경북-주택2015-0057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방주주택건설	김○옥	경북-주택1999-001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범소산업개발	서○도	경북-주택2010-0004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삼영종합건설	박○택	경북-주택2012-000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상일건설	배○현	경북-주택2007-0008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서림	임○춘	경북-주대2015-006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성림종합건설	김○인	경북-주택1989-000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승민종합건설	이○연	경북-주택2004-0015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시호	김○호	경북-주택2015-0035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신영	황○익	경북-주택1998-0001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에셀건설	반○셀	경북-주택2016-0007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예공	이○희	경북-주택2004-0008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요원	김○민	경북-대지2015-0039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우일건설(주)	황○관	경북-대지2014-0018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월성산업(주)	김○형	경북-주택2017-0007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 고
일성건설(주)	정○순	경북-대지2016-0024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제일건설	김○호	경북-주택1988-000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좋은세상주택건설(주)	김○문	경북-주택2003-001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중흥개발	김○관	경북-주택2015-0050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진솔씨앤디	박○규	경북-주택2006-001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청명	원○영	경북-대지2020-0005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토투개발	편○식	경북-주택2002-0013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포시즌	정○창	경북-주택2016-001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하늘종합건설(주)	권○진	경북-주대2003-0029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해뜰건설(주)	이○웅	경북-주택2006-0005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해성종합건설	장○준	경북-주택2012-0022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김○열	경북-주택2007-0026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현주건설(주)	하○홍	경북-주택2007-0027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형산주택(주)	김○동	경북-주택2001-0004	영업정지 1.5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금상개발	김○화	경북-주택2019-002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나무산업개발	이○재	경북-주택2020-0027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동영건설(주)	김○기	경북-주대2019-001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동영토건(주)	채○주	경북-주대2022-0023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토목)	
두일개발	김○숙 외 1	경북-대지2015-005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주)조흥엔에이치티	이○하	경북-주택2015-006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인)	

나. 처분사유 : 주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다.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라. 처분일자 : 2025. 11. 11.

2. 주택법 위반 행정처분 중

가. 경고처분 대상인 경우, 해당 미비사항(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등)을 보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사항으로 인해 경고 누적이 발생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따라 차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처분의 원인이 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 053-753-6393)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안내문

-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9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출석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며,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 기간 : 2025. 10. 27. ~ 2025. 11. 10. (15일간)

2. 공고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나. 처분 대상자 및 청문일시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주)가람	안○수	경북-주택 2019-0021	경북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30-3 상가동 203호	2025. 11. 19.(수) 9:00	등록말소
(주)경동산업개발	정○일	경북-대지 2016-0036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1길 102	2025. 11. 19.(수) 9:15	등록말소
(주)경산아이앤씨	안○모	경북-주택 2020-0016	경북 경산시 경안로65길 11-8 4층 (대평동)	2025. 11. 19.(수) 9:30	등록말소
(주)구미주택	도○언	경북-주택 2021-0018	경북 구미시 아은로 309, 5층 502호(도량동, 글로리아빌딩)	2025. 11. 19.(수) 9:45	등록말소
(주)다채움	김○호	경북-주택 2015-0088	경북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119 2층	2025. 11. 19.(수) 10:15	등록말소
(주)대운종합건설	권○윤	경북-주택 2022-0011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24-13(용흥동)	2025. 11. 19.(수) 10:45	등록말소
(주)동경건설개발	원○경	경북-주대 2016-0043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4길 6-36 3층	2025. 11. 19.(수) 11:15	등록말소
동화건설(주)	윤○권	경북-주택 2016-0035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64번길 9 삼한빌딩 3층	2025. 11. 19.(수) 11:30	등록말소
(주)디에이치개발	최○옥	경북-주택 2020-0013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140번길 42, 1층 (장성동)	2025. 11. 19.(수) 11:45	등록말소
(주)미래글로벌 (BMS)	박○숙	경북-주택 2021-0008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15 비04호	2025. 11. 19.(수) 13:15	등록말소
(주)비앤씨 산업개발	박○복	경북-주택 2022-0021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온천3길 24	2025. 11. 19.(수) 13:30	등록말소
(주)신명	이○훈	경북-주택 2021-001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373	2025. 11. 19.(수) 13:45	등록말소
신성건설	김○희	경북-주택 2011-0029	경북 포항시 북구 대해로 41	2025. 11. 19.(수) 14:00	등록말소
(주)에버건설	장○규	경북-주대 2015-0089	경북 경주시 양정로 313 4층	2025. 11. 19.(수) 14:15	등록말소
(주)에이치디 홀딩스	최○해	경북-주택 2017-004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87 낙동상가 503호	2025. 11. 19.(수) 14:45	등록말소
은성개발(유)	박○순	경북-주택 2018-0030	경북 구미시 역전로 38, 6층(원평동)	2025. 11. 19.(수) 15:15	등록말소
(주)일신개발	조○제	경북-주대 2021-0029	경북 김천시 삼락길 35, 2층 202호(삼락동)	2025. 11. 19.(수) 15:30	등록말소
정토개발(주)	이○우	경북-대지 2021-001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5길 57	2025. 11. 19.(수) 15:45	등록말소
카시아(주)	이○석	경북-주택 2018-0013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45	2025. 11. 19.(수) 16:00	등록말소
(주)토원	김○완	경북-대지 2018-0004	경북 경산시 계양로 38 1층	2025. 11. 19.(수) 16:15	등록말소
(주)한주산업개발	임○철	경북-주택 2018-0011	경북 영주시 대학로 175, 2층 (가흥동)	2025. 11. 19.(수) 16:30	등록말소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마. 법적근거 : 주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1]

바.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전○○ 위원

사. 청문장소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안민관 307호) 내 회의실

아.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자. 지참물

-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 3)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있을 경우)

차. 의견제출 : 청문 전일까지

3.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2호

2025년 경상북도 민원만족도 조사(하반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025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실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공일자 : 2025. 10. 27.(월)

□ 제공받은 기관 : (주)에이스리서치

□ 제공의 법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 이용목적

-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경북도청 민원서비스를 이용한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5. 5. ~ 2025. 10월 기간 중 행정기관에 방문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 민원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5년 11월 예정)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4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7.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연락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054-811-3134)
- 사 업 기 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3. 12. 31.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개 요	• 연 장 : L=19.40km • 폭 원 : 4차로(B=23.4m) (설계속도 120km/hr) • 시·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동면 일원	

* 연서면(용암리, 기룡리, 신대리, 국촌리, 봉암리, 월하리) / 연동면(송용리, 노송리)

2. 공람장소, 공람기간

구분	열람장소	열람기간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2025.10.22.~11.05.(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054-880-3982)
- 제출기간 : 2025.10.27. ~ 2025.11.10.(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6호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출안건 】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5.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해양수산물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163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야생동물구조 관련 업무 이관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
- 2025 경주 APEC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Post APEC 사업 추진을 위해 「APEC준비지원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인재개발원」 이전 등에 따른 소속 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

- 신 설 : 「안전기획관」(안 제6조의3)

나. 분장사무 조정

- 신 설
 - 「안전기획관」 :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지원”(안 제6조의3)

- 「APEC준비지원단」 : “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폐 지
- 「APEC준비지원단」 :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관련 준비·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APEC 관련 시설 개·보수 및 교통·숙박 대책에 관한 사항”, “APEC 의전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APEC 관련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이 관
- 「산림환경연구원」 :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기후환경국」으로 이관 → “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52조)

다. 소속기관 주소 변경

- 「인재개발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1”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안 제22조)
- 「영양소방서」 :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0” →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경제혁신추진단 - 1765(2025. 10. 10.)호

나. 법제심사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감사관 - 14381(2025. 10. 2.)호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 10293(2025. 10. 2.)호

마. 예산 수반사항 : 별도 조치없음

§예산담당관 - 12828(2025. 10. 9.)호

바.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6. ~ 10. 20.

2) 입법예고 방법 : 도보 게재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로 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지원한다.

제12조제2호 중 “자연생태”를 “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관리”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APEC준비지원단) APEC준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2. 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3. 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에 둔다.

제35조의5제1항 중 “19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52조제16호 중 “생태숲·유아숲체험원·야생동물생태공원”을 “생태숲·유아숲체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9-1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경상대로 3203-1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청송소방서	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	청송군 일원
영양소방서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	영양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봉화소방서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3길 152	봉화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및 APEC준비지원단을 둔다. ② (생략) 〈신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 ----- ----- ----- 두고, <u>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3 (생략)	제6조의3(안전기획관) <u>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지원한다.</u> 제6조의4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제12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자연생태</u> ,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3. ~ 8. (생략)	제12조(기후환경국) ----- ----- 1. (현행과 같음) 2. <u>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관리</u> ----- 3. ~ 8. (현행과 같음)
제15조(APEC준비지원단) APEC준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관련 준비·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APEC 관련 시설 개·보수 및 교통·숙박 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APEC준비지원단) APEC준비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PEC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2. APEC 연계 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3. APEC 의전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APEC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APEC 관련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APEC 시설·유산 사업 예산 총괄·관리
5. 그 밖에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Post - APEC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설치) ① (생략)	제2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재개발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1에 둔다.	② 인재개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에 둔다.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① 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직할구조대 등) ① 119특수대응단의 ----- ----- ----- -----

현행	개정안
제5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5. (생략)	제52조(소관사무)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생태숲·유아숲체험원·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u>	16. <u>생태숲·유아숲체험원</u> -----
17. <u>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u>	----- 〈삭제〉
18. ~ 20. (생략)	17. ~ 19. (현행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관련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이 조례안은 분장사무 조정 등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참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생략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이재성(054-880-2123)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의상
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1. 정책기획관-12823(2025. 9.3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총정원의 증감이 없는 정원정책기준, 직급별 정원 한시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 조정 등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0. 9.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828

(2025. 10. 9.)

접수 정책기획관-13071

(2025. 10. 1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164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APEC준비지원단」 기구 축소에 따라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한시정원을 도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재배치함으로써 공무원 총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재난안전 관리체계 기능 강화 및 연구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970명(변동 없음)

- 집행기관의 정원 : 2,296명(변동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9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변동 없음)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변동 없음)

나. 정원 변동내역

- 「APEC준비지원단」 기구 축소에 따른 한시정원의 수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안 경상북도 조례 5118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 △10명
- 한시정원 : 20명 → 10명(△10)
 - 2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16명 → 2급 1명, 4급 2명, 5급 이하 7명
- 안전행정실 기능강화 인력 보강 : +1명(안 별표 3)
 - 일반직 공무원 : 3급 1명(4급 △1 → 3급 +1)
- 돌봄통합, 경북기록관 개원준비, 중대재해예방, 양자산업, 도로관리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 +9명
 - 일반직 공무원 : 5급 이하 9명
- 연구직 공무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안 별표 3)
 - 연구관 : 45명 → 47명(+2), 연구사 : 200명 → 198명(△2)

다.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연구관 : “20% 이내” → “25% 이내”
- 연구사 : “80% 이상” → “75% 이상”

라.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정무직 공무원 : 3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공무원 : 2,182명(변동 없음)

- 1급 : 1명(변동 없음)
- 2급 : 2명(변동 없음)
- 2~3급 : 2명(변동 없음)
- 3급 : 15명 → 16명(+1)
- 3~4급 : 3명(변동 없음)
- 4급 : 104명 → 103명(△1)
- 5급 이하 : 2,039명(변동 없음)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 없음)
-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공무원 : 245명(변동 없음)
- 연구관 : 45명 → 47명(+2)
- 연구사 : 200명 → 198명(△2)
- 지도직 공무원 : 31명(변동 없음)
- 소방직 공무원 : 5,489명(변동 없음)
- 경찰직 공무원 : 4명(변동 없음)

3. 개정조례안 : 불임

4. 산·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경제혁신추진단 - 1765(2025. 10. 10.)호

나. 법제심사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감사관 - 14444(2025. 10. 2.)호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 10290(2025. 10. 2.)호

마. 예산 수반사항 : 별도 조치없음

§예산담당관 - 12828(2025. 10. 9.)호

바.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6. ~ 10. 20.

2) 입법예고 방법 : 도보 게재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118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중 “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한시정원 20명(2급 1명, 4급 3명, 5급이하 16명)”을 “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한시정원 10명(2급 1명, 4급 2명, 5급 이하 7명)”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22% 이내	39% 이내	31% 이내	1%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2, 7급 3)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5% 이내	75% 이상	38% 이내	62% 이상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25% 이내	60% 이내	15%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9.5% 이내	11% 이내	16% 이내	30% 이내	29.5% 이상

5. 경찰직공무원

구 분	경 감
비 율	100%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관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7,970	-						
정 무 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82	-						
	1급	1							1
	2급	2	1			1			
	2~3급	2	1	1					
	3급	16	12		1	2			1
	3~4급	3	2	1					
	4급	103	70	10	4	10	8	1	
	5급 이하	2,039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이하	12	-						
연구직	소 계	245	-						
	연구관	47			46		1		
	연구사	198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소방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 이하	5,458	-						
경찰직	소 계	4	4						
	경 감	4	4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경상북도 조례 제5118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경상북도 조례 제5118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한시정원) 제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 중 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한시정원 20명(2급 1명, 4급 3명, 5급이하 16명)의 존속기 한은 2026년 8월 31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 ----- 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한시정원 1 0명(2급 1명, 4급 2명, 5급 이하 7명)----- -----.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생략)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20% 이내</td><td>80% 이상</td><td>38% 이내</td><td>62% 이상</td></tr></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25% 이내</td><td>75% 이상</td><td>38% 이내</td><td>62% 이상</td></tr></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5% 이내	75% 이상	38% 이내	62%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5% 이내	75% 이상	38% 이내	62% 이상																									
<신설>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 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계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7,970	-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82	-						
	1급	1							1
	2급	2	1			1			
	2~3급	2	1	1					
	3급	<u>15</u>	<u>11</u>		1	2			1
	3~4급	3	2	1					
	4급	<u>104</u>	<u>71</u>	10	4	10	8	1	
	5급 이하	2,039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구직	소 계	245	-						
	연구관	<u>45</u>			44		1		
	연구사	<u>200</u>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계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7,970	-						
정무직		3	1					2	
일반직	소 계	2,182	-						
	1급	1							1
	2급	2	1			1			
	2~3급	2	1	1					
	3급	<u>16</u>	<u>12</u>		1	2			1
	3~4급	3	2	1					
	4급	<u>103</u>	<u>70</u>	10	4	10	8	1	
	5급 이하	2,039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소 계	16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2	-						
연구직	소 계	245	-						
	연구관	<u>47</u>			44		1		
	연구사	<u>198</u>	-						
지도직	소 계	31	-						
	지도관	10			10				
	지도사	21	-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한려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소방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이하		5,458	-						
경찰직	소 계		4	4						
	경 감		4	4						
<u>〈신 설〉</u>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한려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소방직	소 계		5,489	-						
	소방정		31	7		24				
	소방령이하		5,458	-						
경찰직	소 계		4	4						
	경 감		4	4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한다.										

관련법령발췌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항 (생략)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호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항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이 조례안은 총정원의 증감이 없는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한시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참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생략**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이재성 (054-880-2123)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1. 정책기획관-12823(2025. 9.3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총정원의 증감이 없는 정원정책기준, 직급별 정원 한시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 조정 등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0. 9.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828

(2025. 10. 9.)

접수 정책기획관-13071

(2025. 10. 1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경 상 북 도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 안	1165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경상북도 구미시는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국방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기관	사업건수	출 연 예정규모	비 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개 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 사업비)	450,000천원	

3. 사업내용 : 붙임

4. 관련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사업

출 예 정 연 액	450,000천원('25년 해당없음)				
출 기 연 관	○ 기 관 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세부현황 별첨) ○ 대 표 : 오 상 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사 업 내 용					
출 필 요 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국방반도체 분야기술고도화 및 상용화를 통해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3. ~ 2029.2.(3년간) • 사업위치 : 구미 • 총사업비 : 75억원(도비 13.5, 시비 3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 * '26년 사업비 : 25억원(도비 4.5, 시비 1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 사업내용 - 적외선 센서용 초격자 센서 기술개발 - 고온/고속 동작 비냉각형 볼로미터 기반 열상 센서 개발 - GaN 기반 전력증폭기 기술개발 ○ 기대효과 • 국방반도체 기술 향상으로 기술자립과 국내 생산능력 확보 • 지역기업 참여를 통한 제품상용화, 제조공장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출 근 거 연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검 토 의 견	○ 과학기술기본법 •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경상북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 제12조(사업의 공동 추진)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공동연구사업은 국방과 반도체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 공동연구사업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승인 시 지역조직(경북분원) 설치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소 관 부 서	메타AI과학국 미래첨단산업과	부서장 장미정	담당사무관 신흥철	담당자 김윤택	전화 2271

별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소재지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표전화		일반 : 02-958-5114,6114			설립 주체 (주무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FAX : 02-958-5478				
							URL : https://kist.re.kr				
연혁	• 1966. 02.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 1981. 01.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 • 1989. 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리, 재설립 • 2003. 05. KIST 천연물연구소(강릉) 설치 • 2008. 01.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전북) 설치 • 2024. 03. 제26대 오상록 원장 취임							기관형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25. 10월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비정규직
				일반정규직							
	소계	연구	기술	행정	기능	무기	기타	-			
	정원	985	1	984	626	79	139	9	131	-	174
현원	934	1	933	556	100	146	-	131	-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원장	오상록	現) KIST 원장 前) KIST 강릉분원장 前) 한국로봇학회 회장 前) (구)정보통신부 IT정책자문관							02-958-5001	
주요기능	•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기초·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수행 및 그 성과의 확산 •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의 확산 • 국내외 산·학·연 간 연구협력을 위한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 사업 육성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융역 수탁·위탁 •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자본금(백만원) (2024년말 기준)	설립	1									
재무상태(백만원) (2024년말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 등		
	581,689	221,456	360,233	215,077	203,050	12,027	366,612	1	366,611		

관련법령발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경상북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2조(사업의 공동 추진)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 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1166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함(안 제3조)

다.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권한위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제혁신추진단-1501(2025. 9. 23.)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13584(2025. 9. 16.)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8945(2025. 9. 19.)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9. 29. ~ 10. 19.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예산담당관-13483(2025. 10. 23.)

-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포상금 금액
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	10만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의2	20만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의3	10만원
4.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2호	15만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2호의2	10만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3호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60조의2 제1항제4호	20만원

■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 아래의 내용 중 신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내용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장·군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내용		
※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원칙,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지역사랑상품권은 처리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수령, []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 부동의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장·군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관련법령발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1. 재정수반요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신고 건당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며, 우리 도 위반행위신고 관련 신고 실적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경제통상국 교통정책과 지방공업주사보 김광민(054-880-2667)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이
모든
사람을
대한민국

수신 회계관리과장

(경유)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 교통정책과-23473(2025. 9.1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훈령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포상금은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0. 23.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3483 (2025. 10. 23.) 접수 회계관리과-34513 (2025. 10. 23.)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보

경북의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이송]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
제목 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우리 기관(과)으로 불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귀 기관(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합니다. 끝.

회 계 관 리 과 장

서명생략

주무관 2025. 10. 23.
손예지

협조자

시행 회계관리과-34514 (2025. 10. 23.) 접수 교통정책과-26636 (2025. 10. 23.)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s://gb.go.kr/Main/index.html>
전화번호 054-880-2913 팩스번호 054-880-2929 / syj4927@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1167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청소년육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금의 목적 실현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회 변화에 맞는 정책 대응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제2항)

- 1)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함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제혁신추진단-871(2025. 8. 24.)

나. 법제심사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12342(2025. 8. 21.)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여성가족과-8945(2025. 8. 22.)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9. 15. ~ 10. 4.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예산담당관-11541(2025. 9. 10.)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조성 등) ① (생략)	제5조(기금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② ----- <u>2030년 12월 31일</u> -----.

관련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여성가족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육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서기 하정림(054-880-4674)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이
으로
세우는 대한민국

수신 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여성가족과-8842(2025. 8. 20.) 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안은 현행 여성가족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해당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를 근거로 조성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만 열거되어 있을 뿐, 비용 추계에 필요한 금액, 규모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기금 자원 추가 조성을 위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진결 2025. 9. 10. 차순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641	(2025. 9. 10.)	접수	여성가족과-9585	(2025. 9. 1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6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68
------------	------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통역”은 “수어통역”으로 “수화”라는 용어는 모두 “한국수화언어(약칭한국수어)”로 개정됨
- 이에, 해당 법령을 위임 또는 인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의 용어로 정비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중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함(안 제1조)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함(안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산·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 별도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심사 제외대상 §경제혁신추진단-1387(2025. 9. 16.)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13393(2025. 9. 11.)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대상

- §여성가족과-9587(2025. 9. 10.), 및 9588(2025. 9. 10.)

마. 예산조치 : 비용 수반사항 없음 §예산담당관-11833(2025. 9. 16.)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바.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9. 18. ~ 10. 10.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u>수화통역</u> 및 점자 서비스 확대	4. ----- <u>수어통역</u>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사업)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수화</u> , 점자, 한글 등 교육	9. <u>한국수어</u>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췌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본 개정안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해당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장애인 관련 조례(2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 2. 3.)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전현녕 (054-880-3772)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함께 키우는 신뢰!



경 상 북 도



수신 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1. 장애인복지과-14133(2025. 9. 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해당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장애인 관련 조례(2건)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9. 16.
합조자 차준예

시행 예산담당관-11833 (2025. 9. 16.) 접수 장애인복지과-14468 (2025. 9. 16.)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대국민 공개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꼭 실천해요!

문서관리카드 장애인복지과-14468 1/1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 상 북 도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 안	1169
번 호	

제출일자 : 2025. 10. 2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6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기관	사업건수	위탁·대행 예정규모	비 고
2개 기관	2개 사업	1,850,000천원	

3. 사업내용 : 붙임

4. 관련법령

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사 업 명	수탁·대행공공 기관명	위탁·대행 기간	위탁·대행 예 정 액	비고
계		2개 사업	2개 기관		1,850,000	
1	해양 수산국	우수수산물 육성사업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2026.02.01.~ 2026.12.31. (1년)	1,450,000	해양 수산과
2		2026년 해양수산엑스포	환동해 산업연구원	2026.02.01.~ 2026.12.31. (1년)	400,000	

1 우수수산물 육성사업

위탁·대행 예정액	1,450,000천원('25년 1,450,000천원)				
수탁·대행 공공기관	○ 기관명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표 : 송 경 창 ○ 소재지 : 구미시 이계북로 7				
사 업 내 용					
위탁·대행 필요성	○ 수산기업 육성,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및 행사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 기능 ○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내 우수 수산물 육성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배치 용이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우수수산물 육성사업 ○ 위탁·대행기간 : 2026.02.01. ~ 2026.12.31.(1년) ○ 사업비 산출근거 · 우수수산물 육성사업비 : 1,294,000천원 · 공공운영비 등 : 96,000천원 · 위탁·대행 수수료 : 60,000천원(사업비의 4.1%) ○ 기대효과 · 안테나숍 운영 및 기획전 행사로 우리 道 우수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 ○ 사업내용 · 안테나숍 운영, 온라인 판매지원(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수산물 특판전·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				
위탁·대행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7조, 제8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검 토 의 견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규정에 따라 ‘적정’으로 심의·의결된 사업임. ○ ‘우수수산물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대행 필요				
소 관 부 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부서장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화
		박형환	최진석	전상록	7720

참고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현황

소재지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설립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54-472-2986					설립주체	경상북도	
									FAX : 054-472-2989							
									URL : www.gepa.kr							
연혁	• 1997. 11..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법인 설립 • 2004. 01.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관리 운영 • 2010. 05. 경북일자리종합센터 개소 • 2010. 07.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 2017. 05.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개소 • 2019. 12. 경북행복경제지원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5. 6월 현재)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사무	연구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무기계약	기간제	경비	청소	파견
				정원	65	1	64	56	-	-	-	3	5	12	1	11
현원	64	1	63	55	-	-	-	3	5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이사장		양금희		경제부지사										054-880-2020	
	부이사장(당연직)		송경창		현)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054-472-2986	
	이사(당연직)		이재훈		현)경상북도 경제산업국 국장										054-880-2673	
	"		정기환		현)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053-659-2266	
	이사(선임직)		변창훈		현)대구의대학교 총장										053-819-1001	
	"		백서재		현)(주)대영전자 대표										053-716-8009	
	"		김상영		현)뚝배기식품 대표										053-853-8487	
	"		배선봉		현)산동금속공업(주) 대표										054-977-2250	
	"		김영민		현)법무법인 반석 변호사										010-4812-5060	
	"		김경미		현)수성 F.L 대표										054-443-5161	
	"		김명량		현)지구환경측정(주) 대표										054-274-1260	
	비상임감사(선임직)		박준훈		현)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감사										054-470-8513	
주요기능	• 자금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운전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 애로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 종합상담실 운영, 교육, 컨설팅 등 •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 일자리 발굴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자본금(백만원) (1997년말 기준)	설립		2,500													
재무상태(백만원) (2024년말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46,840	33,303	10,995		2,542	25,610	2,542		16,146	15,431	715					

참고2**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검토내용

검토 사항		검토 의견(도 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접 추진할 경우 담당자 충원을 통해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화가 부족하며, 연차별 지속적 시장 모니터링 및 기업 관리 여력 부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업지원사업의 경험이 많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 연계가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수행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 위탁기관내 구축된 대학·산업 관계자 및 수출전문가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가능
④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경북 지역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에 필요한 해외 주요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네트워크 거점 확보(지역 유관기관 공조: 한국BT특화센터협의회)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 가능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지원기업 수, 홍보활동 횟수, 매출유발액 등 정량적인 수치로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 지원 기업 및 관련 기관(사·군 수산기관 등)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 상황 점검과 안테나숍 등 사업관련 행사 참석을 통한 수시 지도점검 가능

관련법령발췌**□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우리도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기타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농수산물 소비촉진) ① 도는 농수산물의 유통기능 확충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개척 등 판매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명품 육성 지원
2. 농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4.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2026년 해양수산엑스포

위탁·대행 예 정 액	400,000천원('25년 700,000천원)				
수탁·대행 공 공 기 관	○ 기 관 명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대 표 : 권 혁 수 ○ 소 재 지 :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사 업 내 용					
위탁·대행 필 요 성	○ '22년 첫회부터 해양수산엑스포를 위탁대행하여 경험과 노하우 축적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관련 타업무(우수수산물육성, 해양수산창업투자, 수산물할인행사 등) 다수 대행하고 있어 수산기업, 수산관련 단체등과 협업이 용이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해양수산엑스포 ○ 위탁·대행기간 : 2026.02.01. ~ 2026.12.31.(1년) ○ 사업비 산출근거 • 엑스포 행사 운영비 : 370,000천원 • 공공운영비 등 : 5,000천원 • 위탁·대행 수수료 : 25,000천원(사업비의 6%) ○ 기대효과 • 경상북도 해양 및 수산물 관련 전시회 개최로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양수산 정책포럼, 바이어상담회 등을 통한 각종 교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마련 ○ 사업내용 • 해양수산 관련 전시회, 부대행사 등 개최				
위탁·대행 근 거 법 령	○ 수산업법 제93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8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검 토 의 견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규정에 따라 적정으로 심의·의결된 사업임. ○ '2026년 해양수산엑스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대행 필요				
소 관 부 서	해양수산국	부서장	담당사무관	담당자	전화
	해양수산과	박형환	최진석	남효상	7719

참고1

(재)환동해산업연구원 현황

소재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근거) 산업발전법 제3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2항									일반 : 054-780-3400		설립주체	경상북도				
										FAX : 054-780-3429							
										URL : www.mire.re.kr							
연혁	• 2005. 11. 법인 설립(지식경제부 허가 11. 1, 법원등기 11. 18) • 2007. 10. 연구원 개원 및 연구동 건물 완공 • 2013. 07. 해양심층수수질기관, 농산물검사기관, 국가영양성분분석 지정 • 2018. 05.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해양수산부) • 2019. 04.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지정(경상북도) • 2020. 03. 국가식품성분 데이터센터 지정(국립농업과학원) • 2022. 03. 메이커스페이스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5. 7월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비정규직							
				소개	사무	연구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개	무기계약	계약	기간제	경비	청소	파견
				정원	30	1	30	8	22					13	6	7	
현원	30	1	16	6	10												
임원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							연 락 처			
	이사장			손병복			울진군수							054-789-6002			
	비상임이사(당연직)			김명심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독도해양정책과장							054-880-7762			
	"			김광옥			울진군 관광경제국장							054-789-6031			
	"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							054-780-3400			
	"			김정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044-203-4290			
	"			노현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							054-780-5218			
	"			최병용			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장							053-740-7553			
	비상임이사(선임직)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053-819-3019			
	"			김규식			KCI무역 대표							010-5428-6925			
	"			주웅영			前 대구교육대학교수							010-9564-5758			
	"			김도완			중원대학교수							010-4803-7015			
	"			이수출			경북대학교수							010-2552-2885			
	비상임감사(선임직)			최구열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054-253-7800			
"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회계정보과 교수							053-589-7507				
주요기능	• 해양수산분야 맞춤형 기업 지원 • 해양 유래 신소재 기술 개발 • 환동해 해양 인재 육성 • 해양환경, 해양자원 신산업 발굴·지원 •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당 에너지분야 기업지원																
자본금(백만원) (2024년말 기준)	설립																
재무상태(백만원) (2024년말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	자본금	잉여금등							
	7,068	6,813	255	4,036	3,125	859	51	3,032	200	2,832							

참고2**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검토내용

검토 사항		검토 의견(도 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접 추진할 경우 담당자 충원을 통해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화가 부족 • 해외수출상담회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의 전문직원을 보유함으로써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서도 위탁추진이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위탁기관내 다년간 해양수산 사업으로 구축된 기업, 유관기관과 연계성 우수하며, 1회 때부터 본 사업을 위탁추진함으로써 관련 노하우 보유
③	경제적 효율성	• 행사사업의 경험이 많고 사업 관련 전문직원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 가능
④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행사 관련 전문직원 보유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참여기업·방문객 수, 구매상담회 및 수출상담 추진성과(계약액, 상담액) 등 정량적인 수치로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 다년간 해양수산 관련 기업, 유관기관과의 사업추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행사 관련 서비스 공급에 용이

관련법령발췌**□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기타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농수산물 소비촉진) ① 도는 농수산물의 유통기능 확충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개척 등 판매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기능 확충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9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편익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아래 위임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신설
 -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를 해당 시군에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대구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등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9조, 제1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의 용지보상 사무를 해당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 사업 추진
-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라 위반업체의 신속한 행정처분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
- 전기공사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 전기공사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
- 전기공사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이해관계인의 공사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
- 전기공사사업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11.28일,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시군에 위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
- 과태료의 부과 징수

나.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 정비(안 별표 3)

- 대응예방과 → 예방안전과

3.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 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2125, Fax 054-880-2149, 이메일 : kimny0660@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회계 관리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기업 지원과 에너지 정책과 공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등 의견청취 및 다른 시·도지사 등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및 제2조의7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마. 조합 해산 신고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무자의 지정 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46조의2제1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8조제4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라.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4.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의 감독 바.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사. 신고확인증 발급	같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70조의2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장·군수
교 통 정 책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7조	시장·군수 (S O F 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시장·군수 (S O F A 자 동 차 에 대 해 서 는 칠 곡 군 수 를 말한다)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8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장·군수 (S O F A 자 동 차 에 대 해 서 는 칠 곡 군 수 를 말한다)
	2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6.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2조	
	27.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28.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29.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제5항	
	32.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3.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	
	34.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	
	35.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시장·군수 (S O F A 자 동 차 에 대 해 서 는 칠곡군수 를 말한다)
	나.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카.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36.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	
	37.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8.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39.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시장·군수 (S O F A 자 동 차 에 대 해 서 는 칠곡군수 를 말한다)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	
	40.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시장·군수 (S O F 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시장·군수 (SOFA자 동차에 대 해서는 칠 곡군수를 말한 다)
	42.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3.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같은 법 제60조제1항	
	44.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4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제7호	
	46.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47.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48.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49.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교통안전법」 제54조제1항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40조의5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범죄경력 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53.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 고시 및 관계기관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같은 법 제13조제2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외 통 상 과	1.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시장·군수
산 업 입 지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입 지 과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 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 2 조 제 5 항 에 따 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입 지 과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 2 조 제 5 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시장·군수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지방자치법」 제198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입 지 과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시장·군수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같은 법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같은 법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 입지과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시장·군수
문화 예술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2.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3.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행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시장·군수
농업 대전환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농식품 유통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2. 시료 수거 등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과태료 부과·징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스 마 트 농 업 혁 신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식물방역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농어촌정비법」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축 산 정 책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축산법」제8조제1항 같은법 제12조	시장·군수
동 물 방 역 과	1.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8조	시장·군수
기 후 환 경 정 책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업무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5조 「소음·진동관리법」제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 책 과	가.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시장·군수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성능 유지명령	같은 법 제60조의2 제5항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제82조제1항제7호·제8호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같은 법제94조제4항제5호·제6호	
	8.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9.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같은 법 제19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시장·군수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3	시장·군수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0.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업무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2항	
	12. 동물원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수족관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가. 동물원의 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동물원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0조	
	다. 동물원의 휴·폐원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	
	라. 동물원 안전관리	같은 법 제16조	
	마. 동물원 운영·관리 기록 제출 요구	같은 법 제21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바. 동물원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22조	시장·군수
	사. 동물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3조	
	아. 동물원 허가 취소, 영업정지 관련 청문	같은 법 제27조	
	자.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32조	
	13.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사용과 관련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제49조제4항	
환경 관리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시장·군수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같은 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2조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같은 법 제44조·제45조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0.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시장·군수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라. 청문	같은 법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1.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같은 법 제25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같은 법 제25조제4항	
	6)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7) 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시장·군수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접수·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 (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제40조제8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의3제2호라목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관리과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니.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 디. 과태료 부과·징수 12.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바.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같은 법 제47조의2 같은 법 제6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같은 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45조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같은 법 제45조·제46조	
	러. 청문	같은 법 제57조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관리과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서. 과태료 부과·징수 1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제20조의11	시장·군수
맑은물정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3.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4.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5.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6.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하수도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물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맑은 물 정책과	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68조제1항 같은 법 제82조제2항	시장·군수
수자원 관리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 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시장·군수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 조치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계획 수립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27.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다.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라.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정책과	1. 산림기술 진흥 등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산림기술자 배치 나. 과태료 부과·징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제33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제6조 「산림보호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3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4 같은 법 제13조의5 같은 법 제13조의6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 정 책 과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시장·군수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제19조 및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의 대집행 등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	같은 법 제4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정책과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장·군수
산림레저관광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군수
산림소득과	1.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 취소 나. 독립가(자영독립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시장·군수
아동보육가족과 청소년과 외국인공동체 사회복지 어르신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건 정책과 공통사항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2.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4.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5.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6.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7.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8.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9.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0.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1.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의료법」제59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5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서.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퍼. 방수설비 허. 유수지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고. 폐차장 노. 청소년수련시설 도.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모. 자동차정류장 보. 열공급설비 소. 방송·통신시설 오. 공동구 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초. 종합의료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2.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결정 및 고시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4.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제48조, 제88조 제9항 같은 법 제32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53조	시장·군수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 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7.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같은 법 제98조	
	8.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9.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0.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	
	11.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12.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4.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6.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17.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18.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19.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20.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시장·군수
	21.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2.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3.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5.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6.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2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17조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139조	
	2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3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3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시장 군수 시행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인가 3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공고 3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34. 감독 및 감사 등 35.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330만㎡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36.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37.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38.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39.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도시개발법」(법률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 제47조 및 제55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6조의2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33조	시장·군수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40조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제31조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0조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같은 법 제83조	
	12.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14.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같은 법 제7조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81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다. 협의 라. 계약의 체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18. 미불용지의 평가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21. 등록번호표 반납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23. 건설기계의 폐기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부동산등기법」제27조 및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44조	시장·군수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도로법」제51조 및 제52조	
	27. 원인자 부담금	같은 법 제91조	
	28.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29.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94조	
	3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31.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3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공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나. 공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33. 건설기계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34.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약	같은 법 제46조	
	35. 도 시행 도시철도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 철도과	가.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나.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다.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도시철도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시장·군수
건축 디자인과	1.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나.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대집행 4.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제16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6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12조의9	시장·군수 시장·군수
토지 정보과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도로명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한정한다) 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다. 고지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시장·군수
에너지 정책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미래에너지수소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장·군수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1조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같은 법 제39조제6항·제7항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4항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8조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의2	
	4.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공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나.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	같은법 제27조	
	다.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같은법 제28조	
	라.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	같은법 제29조	
	마.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법 제30조제2호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46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5.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2항제3의2호	시장·군수
해 양 수 산 과	1.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2. 연안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연안어업의 허가 나.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 다.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연안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어업허가의 취소(연안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청문의 실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수산업법」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같은 법 제103조제2호	시장·군수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 재 복 지 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전보권(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권(과장급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 기술원장
	3. 연구사의 원내 전보권(본원과 지원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환경 연구원장
소 방 행 정 과	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대응단·119산불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7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119산불특수대응단
예 방 안 전 과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다. 지위승계신고 수리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16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소 방 서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자원 관리과	1 ~ 26 (생략)	(생략)	(생략)	수자원 관리과	1 ~ 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27.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신설〉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신설〉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신설〉				다.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설〉				라. 도유재산 중 도 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도로 철도과	1. ~ 33 (생략)	(생략)	(생략)	도로 철도과	1. ~ 3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34.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46조	
	〈신설〉	〈신설〉			가. 철도보호지구 안 에서의 행위의 신고수 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신설〉	〈신설〉			나. 손실보상 및 손 실보상에 관한 협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로 철도과	〈신설〉				35. 도 시행 도시철도 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		
	〈신설〉	〈신설〉			가.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도시철도법」 제9조	
	〈신설〉	〈신설〉			나.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같은 법 제10조	
	〈신설〉	〈신설〉			다.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등기 법」 제98조, 제 99조	
미래 에너지 수소과	1. ~ 3. (생략)	〈생략〉	〈생략〉	미래 에너지수 소과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4.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신설〉			가. 전기공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신설〉	〈신설〉			나.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	같은법 제27조	
	〈신설〉	〈신설〉			다.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같은법 제28조	
	〈신설〉	〈신설〉			라.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	같은법 제29조	
	〈신설〉	〈신설〉			마. 청문	같은법 제30 조제2호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미래에너지수소과	〈신설〉	〈신설〉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46조	
	〈신설〉				5.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신설〉			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신설〉	〈신설〉			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	같은법 제21조의3	
	〈신설〉	〈신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5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2항제3의2호	

현행				개정안			
[별표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대응예방과</u>	1. ~ 2. (생략)	(생략)	(생 략)	<u>예방안전과</u>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췌

[별표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지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지설을 할 것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 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도시철도건설자(「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관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 제2항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2.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의2. 제14조 제1항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제31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 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 제3항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 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노영 (054-880-2125)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경북이
인문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정책기획관-13668(2025.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훈령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야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0. 23.
합조자 차순애

시행 예산담당관-13491 (2025. 10. 23.) 접수 정책기획관-13904 (2025. 10. 23.)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0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등록일
경북지리정보 (이영수)	공공측량 (330-26-01818)	03-001684	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 67번길 4, 1층(가흥동)	2025.10.24.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분할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양수(분할합병) 등록하고 동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등록내역

양 도 자			양 수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320258 (214-88-91087)	세경네트웍스 주식회사 (이주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 10, 5층(서초동, 삼화빌딩)	320258 (504-86-20614)	주식회사 진승전기통신 (심규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3

□ 수리일자 : 2025. 10. 24.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1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540535 (604-81-45190)	주식회사 넥스온 (박미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1408호(창업보육센터)	2025.10.24.

끝.

2025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5-217호

**경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강 클린코리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8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시 의제 처리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7.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8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시설결정면적 및 사업시행면적 (변경없음) : $A = 14,629\text{m}^2$

나. 건축면적 및 연면적

- 건축면적 : 기정 $3,673.16\text{m}^2 \rightarrow$ 변경 $3,718.16\text{m}^2$ (증 45m^2)

- 연 면 적 : 기정 $1,675.04\text{m}^2 \rightarrow$ 변경 $1,720.04\text{m}^2$ (증 45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 클린코리아 대표 임홍준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43-6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미시 고시 제2025 270호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 이후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효력을 잃은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됨.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실효)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중앙	근린공원	광평동 산56번지 일원	265,968	감)7,889	258,079	건설부고시 제1973-524호 1973.12.31.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4	들성	근린공원	고아읍 문성리 산46번지 일원	254,604	감)66,499	188,105	건설부고시 제1973-524호 1973.12.31.	미집행 구간의 실효

3. 실효일자 : 2025. 6. 30.

4.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4)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5-144호

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경산시 고시 제2020-130호 (2020.7.2)로 고시한 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하7	27~41	주간선 도로	3,000	청천리 308-1	대로1-하1 (은호리 322-5)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1387호 (1965. 2. 2.)	-
변경	대로	1	하7	27~41	주간선 도로	3,000	청천리 308-1	대로1-하1 (은호리 322-5)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1387호 (1965. 2. 2.)	미집행 구간 실효

■ 결정(정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소로 2-29	소로 2-29	• 대로 1-하7호선 선형 변경 • B=27~41m, L=3,000m	•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노선 고시 누락에 따라 금회 실효 고시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정정 고시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누락 오기 정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덕군 고시 제2025-149호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영 덕 군 수

1.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개요

가. 관 광 지 명 : 고래불 관광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영해면 대진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881,862m²

라. 최 초 지 정 일 자 : 1988. 03. 28.

마. 최종조성계획변경일자 : 2024. 12. 05.

바. 사 업 기 간 : 2001년 ~ 2026년

사. 사업시행자 : 영덕군수

아. 사 업 비 : 263,677백만원

2. 변경 내용

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내용

- 관광 휴양·오락시설 [33] 다목적구장 변경

: 건축면적 $A=531.23\text{m}^2 \rightarrow 652.18\text{m}^2$, 증) 120.95m^2

연 면 적 $A=530.22\text{m}^2 \rightarrow 651.17\text{m}^2$, 증) 120.95m^2

나.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유

- 다목적구장 사업시행 중 합리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시설배치 등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과 같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5.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가.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으로 현황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함

**6. 승인고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영덕군 문화관광과(☎054-730-651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1.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붙임 1”

〈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81,862.0	100.0	
공공편익시설	122,265.0	13.8	
숙 박 시 설	60,477.0	6.9	
상 가 시 설	27,017.0	3.1	
관광 휴양 · 오락시설	199,260.4	22.6	
기 타 시 설	472,842.6	53.6	

※ 공공편익시설은 기반시설 면적(123,488.00㎡) 포함

2. 시설물설치계획(변경)

시설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구성비 (%)	시설개요(동·개소)		건축면적(㎡)		비고	
					동·개소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881,862.0	100.0	60동·17개소	-	40,509.97	116,767.62	
			변경	881,862.0	-	증) 3동	-	증) 120.95	증) 120.95	
			변경후	881,862.0	100.0	63동·17개소	-	40,630.92	116,888.57	
공공 편의 시설	소 계		122,265.0	13.8	7동·6개소	-	1,271.60	1,553.51		
	1	도 로	77,342.0	-	-	-	-	-		
	2	주차장	32,448.0	-	1동·6개소	-	226.40	338.35		
	2-1	주차장	4,600.0	-	1개소	-	-	-		
		2-2	주차장	2,565.0	-	1개소	-	-	-	
		2-3	주차장	8,720.0	-	1개소	-	-	-	
		2-4	주차장	1,675.0	-	1개소	-	-	-	
		2-5	주차장	4,880.0	-	1개소	-	-	-	
		2-6	주차장	10,008.0	-	1동·1개소	지하1층 지상2층	226.40	338.35	
	3	공공시설	12,475.0	-	6동	-	1,045.20	1,215.16		
	3-1	공중화장실	1,340.0	-	1동	1층	142.49	142.49		
	3-2	공중화장실	1,253.0	-	1동	1층	105.58	105.58		
	3-3	공중화장실	3,310.0	-	1동	1층	108.23	108.23		
	3-4	샤워장	1,130.0	-	1동	1층	151.70	151.70		
	3-6	샤워장	790.0	-	1동	1층	132.55	132.55		
	3-7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4,247.0	-	-	-	-	-		
	3-8	하계휴양소편의 시설	405.0	-	1동	2층	404.65	574.61	공중화장실 샤워장포함	

시설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구성비 (%)	시설개요 (동·개소)		건축면적(㎡)		비고
					동·개소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숙박 시설	소 계		60,477.0	6.9	7동	-	6,280.00	40,886.00	
	4	여 관	1,871.0	-	2동	-	600.00	2,240.00	
	4-1	여 관	351.0	-	1동	지하1층 지상5층	220.00	440.00	
	4-5	여 관	1,520.0	-	1동	지하1층 지상5층	380.00	1,800.00	
	5	관광호텔	23,661.0	-	2동	-	1,600.00	11,456.00	
	5-1	관광호텔	16,732.0	-	1동	지하1층 지상8층	960.00	6,874.00	
	5-2	관광호텔	6,929.0	-	1동	지하1층 지상8층	640.00	4,582.00	
	6	콘도미니엄	13,200.0	-	1동	지하1층 지상8층	1,680.00	12,870.00	
	7	가족호텔	21,745.0	-	2동	-	2,400.00	14,320.00	
	7-1	가족호텔	16,880.0	-	1동	지하1층 지상8층	1,200.00	8,592.00	
	7-2	가족호텔	4,865.0	-	1동	지하1층 지상5층	1,200.00	5,728.00	
상가 시설	소 계		27,017.0	3.1	17동	-	7,110.00	15,510.00	
	8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5,467.0	-	15동	-	5,220.00	9,890.00	
	8-1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785.0	-	1동	지상2층	439.00	840.00	
	8-2	상가(음식점 및 판매시설)	950.0	-	1동	지상2층	440.00	840.00	
	8-3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945.0	-	1동	지상2층	440.00	840.00	
	8-4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965.0	-	1동	지상2층	439.00	840.00	
	8-5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875.0	-	1동	지상2층	360.00	680.00	
	8-6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290.0	-	1동	지상2층	460.00	860.00	
	8-7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270.0	-	1동	지상2층	460.00	860.00	
	8-8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980.0	-	1동	지상2층	360.00	680.00	
	8-9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015.0	-	1동	지상2층	542.00	940.00	
	8-10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980.0	-	1동	지상2층	140.00	280.00	
	8-11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100.0	-	1동	지상2층	380.00	720.00	
	8-12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576.0	-	1동	지상2층	230.00	450.00	
	8-13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030.0	-	1동	지상2층	190.00	380.00	
	8-14	상가(음식점및 판매시설)	1,071.0	-	1동	지상2층	200.00	400.00	
	8-15	상가(음식및 판매시설)	635.0	-	1동	지상2층	140.00	280.00	
	9	종합상가	11,550.0	-	2동	-	1,890.00	5,620.00	
	9-1	종합상가	8,650.0	-	1동	지하1층 지상3층	740.00	2,170.00	
	9-2	종합상가	2,900.0	-	1동	지하1층 지상3층	1,150.00	3,450.00	

시설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구성비 (%)	시설개요(동·개소)		건축면적(㎡)		비 고
					동·개소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관광 휴양· 오락 시설	소 계	기 정	199,260.4	22.6	29동·11개소	-	25,848.37	58,818.11	
		변 경	-	-	증) 3동	-	증) 120.95	증) 120.95	
		변경 후	199,260.4	22.6	32동·11개소	-	25,969.32	58,939.06	
	10	종합위락시설	3,580.0	-	1동	지하1층 지상3층	1,530.00	4,235.00	
	11	비치발리볼경기장	950.0	-	1개소·2면	-	-	-	
	12	싸이클 대여점	183.0	-	1동	지상1층	100.00	100.00	
	13	다목적 운동장	2,200.0	-	1개소	-	-	-	
	15	해수풀장	6,920.0	-	1동	지상3층	3,500.00	10,300.00	
	16	배드민턴장	1,810.0	-	1개소·2면	-	-	-	
	17	골프연습장	6,150.0	-	1동	지상3층	870.00	2,766.00	
	18	게이트볼장	3,260.0	-	1개소·2면	-	-	-	
	19	번지점프장	1,330.0	-	1개소	-	-	-	
	20	풋살구장	1,082.0	-	1개소	-	-	-	
	21	체력단련시설	100.0	-	-	-	-	-	
	28	스포츠센터	1,341.0	-	1동	-	340.16	340.16	
	22	야영장	74,921.0	-	9동	-	1,106.92	1,084.56	
	22-3	오토캠핑장	63,891.0	-	7동	지상1층	886.00	886.00	
	22-4	고래볼캠핑장	11,030.0	-	2동	지상1층	220.92	198.56	
	24	연수원	43,462.4	-	4동·3개소	-	5,385.82	10,552.99	
	24-1	연수원	25,547.4	-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5,385.82	10,552.99	
	24-3	야영장	4,065.0	-	1개소	-	-	-	
	24-4	서바이벌 게임장	2,950.0	-	1개소	-	-	-	적환장 포함
	24-5	피크닉장	10,900.0	-	1개소	-	-	-	
	25	휴게광장	7,950.0	-	1개소	-	-	-	
	26	야외공연장	2,340.0	-	1개소	-	-	-	
	29	복합문화 관광안내센터	1,700.0	-	1동	지상3층	471.24	786.72	
	30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11,991.0	-	2동	지하1층 지상2층	1,154.97	2,547.70	
	31	수련원	14,120.0	-	1동	지하1층 지상4층	5,619.45	15,378.49	
	32	어울림센터	1,365.0	-	1동	지상1층	560.50	498.90	
	33	다목적 구장	기 정	1,346.0	-	2동	지상1층	531.23	530.22
			변 경	-	-	-	증) 120.95	증) 120.95	
			변경 후	1,346.0	-	5동	지상1층	652.18	651.17
	34	국립해양생물종 복원센터	11,159.0	-	4동	-	4,678.08	9,697.37	
	34-1	교육연구시설	8,092.0	-	3동	지하1층 지상2층	4,064.66	8,560.96	
	34-2	기숙사시설	3,067.0	-	1동	지하1층 지상2층	613.42	1,136.41	
기타 시설	소 계		472,842.6	53.6	-	-	-	-	
	27-1	원형보전녹지	186,010.0	-	-	-	-	-	
	27-2	시설녹지	15,725.0	-	-	-	-	-	
	27-3	기타	271,107.6	-	-	-	-	-	

3.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투자비(백만원)								
	계	재원포		1단계(2001~2006년)			2단계(2007~2011년)			3단계(2012~2026년)		
		공	공 민 자	계	공	공 민 자	계	공	공 민 자	계	공	공 민 자
합 계	263,677	97,115	166,562	18,696	12,696	6,000	32,181	10,519	21,662	212,800	73,900	138,900
공공편의 시설	20,909	20,909	-	12,696	12,696	-	5,613	5,613	-	2,600	2,600	-
숙박시설	91,418	-	91,418	-	-	-	-	-	-	91,418	-	91,418
상가시설	26,224	-	26,224	6,000	-	6,000	-	-	-	20,224	-	20,224
관광휴양 · 오락시설	123,973	75,053	48,920	-	-	-	25,415	3,753	21,662	98,558	71,300	27,258
기타시설	1,153	1,153	-	-	-	-	1,153	1,153	-	-	-	-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5-2972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락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구미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락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구 미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건 명 :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동락공원) 결정(변경)(안)
- 위 치 : 구미시 진평동 766번지 일원 (동락공원)
- 규 모 : 295,118.0㎡
 - 시설면적 : 132,372.24㎡(44.8%) → 117,686.81㎡(39.9%), 감)14,685.43㎡
 - 녹지면적 : 162,745.76㎡(55.2%) → 177,431.19㎡(60.1%), 증)14,685.43㎡
- 금회 설치 시설
 - 스포츠클라이밍센터

2. 조성계획 결정(안) 조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동락 공원	근린 공원	구미시 진평동 766번지 일원	295,118.0	295,118.0	건교고(제1973- 524호) (1973.12.31.)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동락공원	클라이밍센터 신설 : 1,801.00㎡ - 공원세부시설계획변경 기정:132,372.24㎡ →변경:117,686.81㎡(감14,685.43㎡)	-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 변경 - 당초 시설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40% 이상으로 이번 공원조성계획변경 시 기존 시설 및 면적을 재검토하여법정기준 전체의 40%이하 조정

○ 공원조성계획(변경) 총괄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295,118.00	100.0	295,118.00	100.0		
시설면적	132,372.24	44.8	117,686.81	39.9	감)14,685.43	법정기준:40%이하
녹지면적	162,745.76	55.2	177,431.19	60.1	증)14,685.43	

구 분		면 적 (㎡)			건 축 물			비 고
		기정	변경	구성비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295,118.00	295,118.00	100.0	33	4,492.99	6,860.84	
시 설 종 류	시설소계	132,372.24	117,686.81	39.9		4,492.99	6,860.84	감14,685.43
	도로 및 광장	59,100.51	51,972.03	17.6				감7,128.48
	조경시설	2,091.90	1,664.40	0.6		107.00	107.00	감427.50
	휴양시설	5,970.90	1,085.00	0.4				감4,885.90
	유흥시설	2,804.82	880.99	0.3		400.50	850.00	감1,923.83
	운동시설	30,529.07	28,329.07	9.6		766.71	828.96	감2,200
	교양시설	8,239.46	8,138.46	2.8		1,651.41	3,007.04	감101.00
	편익시설	22,700.79	20,768.47	7.0		632.58	765.29	감1,932.32
	관리시설	934.79		0.3		934.79	1,302.55	
	그밖의시설		3,913.60	1.3				신설
녹지 및 기타		162,745.76	177,431.19	60.1				증)14,685.43

3. 변경사유서

- 동락공원 내 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신설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민 여가 활동 선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지역민들이 좀 더 쾌적한 근린생활환경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

4. 첨부자료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등 : 게재 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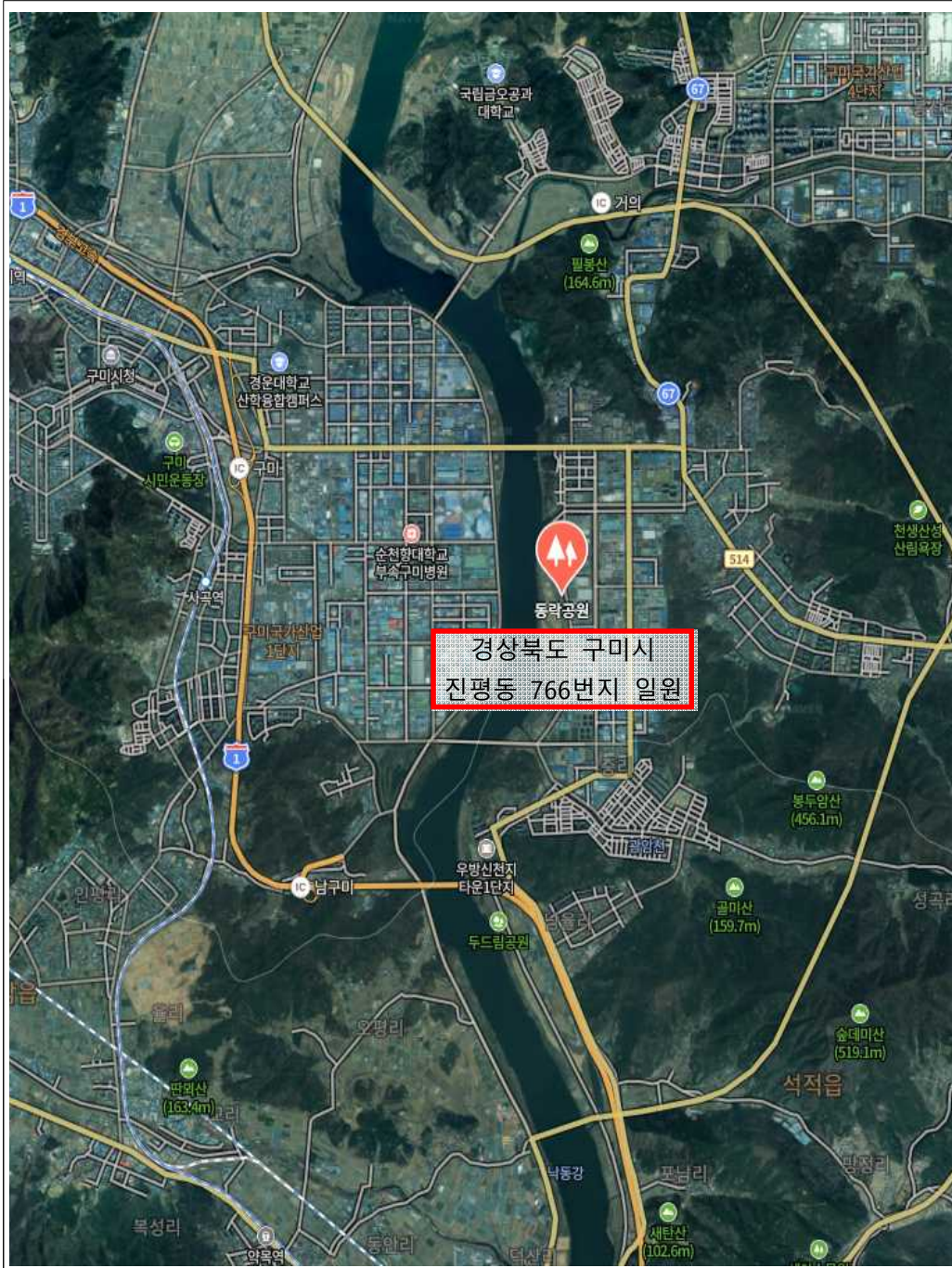
- 공람목적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람기간 : 공고게시일 익일로부터 14일간(2025. 10. 27. ~ 11. 10.)
- 공람장소 : 구미시청 공공시설과(☎054-480-3908)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년 ~ 2027년

7. 기타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등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공공시설과(☎054-480-39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공공시설과(☎054-480-3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위 성 사 진



별 첨 1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미 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동락 공원	근린 공원	구미시 진평동 766번지 일원	295,118.0	295,118.0	건교고 (제1973-524호) 1973.12.31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동락공원	클라이밍센터 신설 : 1,801.00㎡ 공원세부시설계획 변경 기정:132,372.24㎡ →변경:117,686.81㎡ (감14,685.43㎡)	-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 변경 - 당초 시설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40% 이상으로 이번 공원조성계획변경 시 기존 시설 및 면적을 재검토하여 법정기준 전체의 40%이하 조정

나. 공원 세부시설별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면적	○ 변경없음	
	공원시설	○ 변경 감) 14,685.43㎡ (당초 132,372.24㎡→변경 117,686.81㎡)	· 공원시설 건립 및 시설면적 법정기준 준수 확보에 따른 공원시설 면적의 증감
가	도로 및 광장	○ 감) 7,128.48㎡ (당초 59,100.51㎡→변경 51,972.03㎡)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따른 도로 면적 조정
나	조경시설 (생태연못 등)	○ 감) 427.50㎡ (당초 2,091.90㎡→변경 1,664.40㎡)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따른 도로 면적 조정
다	휴양시설 (휴게공간)	○ 감) 4,885.90㎡ (당초 5,970.90㎡→변경 1,805.00㎡)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따른 도로 면적 조정
라	유희시설 (놀이터)	○ 감) 1,923.83㎡ (당초 2,804.82㎡→변경 880.99㎡)	· 공원시설 건립에 따른 유희 면적 및 위치 조정
마	운동시설 (야구장 등)	○ 감) 2,200.00㎡ (당초 30,529.07㎡→변경 28,329.07㎡)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운동 면적 조정
바	교양시설 (야외무대 등)	○ 감) 101.00㎡ (당초 8,239.46㎡→변경 8,138.46㎡)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교양 면적 조정
사	편익시설 (주차장)	○ 감) 1,932.32㎡ (당초 22,700.79㎡→변경 20,768.47㎡)	· 시설면적 법정기준 40% 초과로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편익 면적 조정
아	관리시설 (창고)	○ 변경없음	
자	그밖의시설 (동물놀이터)	○ 신설 3,913.60㎡	· 시설 및 면적 재검토에 따른 기존 누락된 시설 추가
	녹지 및 기타	○ 변경 증) 14,685.43㎡ (당초 162,745.76㎡→변경 177,431.19㎡)	· 법정기준 준수 확보를 위한 녹지 면적 조정

다. 총 괄 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계			295,118.00	100,0	3,926.59	6,294.44	기정
계			295,118.00	100,0	4,492.99	6,860.84	변경
공 원 이 용 시 설	소 계		132,372.24	44.8	3,926.59	6,294.44	기정
	소 계		117,686.81	39.9	4,492.99	6,860.84	변경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59,100.51	20.0	-	-	기정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51,972.03	17.6	-	-	변경
	조경시설	생태연못 외 8종	2,091.90	0.7	107.00	107.00	기정
	조경시설	생태연못 외 7종	1,664.40	0.6	107.00	107.00	변경
	휴양시설	휴게소 및 쉼터	5,970.90	2.0	-	-	기정
	휴양시설	휴게소 및 쉼터	1,085.00	0.4	-	-	변경
	유희시설	놀이터 외 2종	2,804.82	1.0	400.50	850.00	기정
	유희시설	놀이터 외 1종	880.99	0.3	400.50	850.00	변경
	운동시설	야구장 외 7종	30,529.07	10.3	200.31	262.56	기정
	운동시설	야구장 외 6종	28,329.07	9.6	766.71	828.96	변경
	교양시설	야외무대 외 15종	8,239.46	2.8	1,651.41	3,007.04	기정
	교양시설	야외무대 외 13종	8,138.46	2.8	1,651.41	3,007.04	변경
	편익시설	주차장 외 5종	22,700.79	7.7	632.58	765.29	기정
	편익시설	주차장 외 5종	20,768.47	7.0	632.58	765.29	변경
관리시설	창고	934.79	0.3	934.79	1,302.55		
그밖의시설	동물놀이터	3,913.60	1.3	-	-	신설	
녹지 및 기타			162,745.76	55.2	-	-	기정
녹지 및 기타			177,431.19	60.1	-	-	변경

라.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0,437.7	34,796.0				기정
총 계				7,007.8	28,956.3				변경
소로	소 계			4,550.6	22,864.5				기정
	소 계			4,481.0	22,514.9				변경
	1	1	10.0	30.0	300.0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	광장-3	
	2	2	9.0	48.0	432.0	연결로	소3-25	소3-27	기정
	2	2	9.0	76.0 (▲28.0)	684.0 (▲252.0)	연결로	소3-25	소3-27	변경
	3	1	5.0	1,653.0	8,311.0	진입로	소3-5	광장14	
		5	3.0	132.7	390.0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산3-1)	소3-40	
		6	5.0	656.8	3,284.0	연결로	축구장	광장-5	
		7	6.0	16.7	100.2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	주차장-6	
		8	6.0	16.1	96.6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	주차장-6	
		9	6.0	19.7	118.2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	주차장-5	
		10	6.0	22.8	136.8	진입로	지구계경계도로	주차장-5	
		11	3.0~5.0	301.7	1,358.5	연결로	광장-5	태극지연못-7	
		12	6.0	12.1	72.6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4	
		13	6.0	103.4	620.4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4	기정
		13	6.0	13.0 (▼90.4)	78.0 (▼542.4)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4	변경
		14	5.0	194.1	970.5	연결로	태극지연못-6	광장-9	
		15	5.0	122.3	611.5	연결로	광장-9	산3-51	
		16	6.0	16.5	99.0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3	
		18	6.0	25.0	150.0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3	
		19	5.0	126.2	631.0	연결로	광장-11	광장-12	
		20	5.0	8.3	41.5	연결로	소3-1	광장-12	
		21	5.0	31.0	155.0	연결로	광장-12	광장-13	
		22	6.0	24.6	147.6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2	
		23	5.0~7.0	40.2	241.2	연결로	광장-13	광장-14	기정
		23	5.0~7.0	33.0 (▼7.2)	182.0 (▼59.2)	연결로	광장-13	광장-14	변경
		25	5.0	192.6	963.0	연결로	다목적광장-14	소2-2	
		27	6.0	425.6	2,553.6	진입로	지구계경계	주차장-1	
		40	2.5~3.0	189.8	562.0	연결로	소3-41	소3-5	
		41	3.5	132.8	490.0	진입로	지구계경계	소3-40	
		46	2.8~4.7	8.6	28.3	진입로	임수동535-4답	광장-2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산책로	소 계			5,887.1	11,931.5				기정
	소 계			2,526.8	6,441.4				변경
	3	4	3.0	14.2	44.0	산책로	소3-5	야구장	
		6	2.5	7.5	18.8	연결로	소3-5	주차장-7	
		7	2.5	8.0	20.0	연결로	소3-1	주차장-7	
		8	3.0	5.0	15.0	연결로	소3-5	주차장-7	
		9	4.0	18.5	74.0	연결로	광장-3	주차장-7	
		10	2.5	2.5	6.3	연결로	광장-3	주차장-7	
		11	1.5	0.0 (▼6.9)	0.0 (▼10.4)	산책로	소3-5	주차장-2	삭제
		12	1.5	0.0 (▼12.4)	0.0 (▼18.6)	산책로	주차장-2	소1-1	삭제
		13	1.5	0.0 (▼335.2)	0.0 (▼502.8)	산책로	소1-1	소3-7	삭제
		14	2.5	166.6	416.5	연결로	소3-1	소3-6	기정
		14	2.5	83 (▼83.6)	207.5 (▼209.0)	연결로	소3-1	소3-6	변경
		15	2.5	7.0	17.5	연결로	소3-6	주차장-3	
		16	2.5	7.0	17.5	연결로	소3-6	주차장-3	
		17	1.5	0.0 (▼104.2)	0.0 (▼156.3)	산책로	소3-7	소3-8	삭제
		18	1.5	0.0 (▼229.4)	0.0 (▼344.1)	산책로	소3-18	소3-9	삭제
		19	2.5	0.0 (▼24.3)	0.0 (▼60.8)	연결로	소3-1	소3-6	삭제
		20	2.5	4.9	12.3	연결로	소3-6	주차장-5	
		21	1.5	0.0 (▼73.6)	0.0 (▼110.4)	산책로	소3-9	소3-10	삭제
		22	1.5	0.0 (▼14.8)	0.0 (▼22.2)	산책로	소3-10	광장-6	삭제
		23	1.5	0.0 (▼19.5)	0.0 (▼29.3)	산책로	광장-6	소3-12	삭제
		24	2.5	0.0 (▼9.9)	0.0 (▼24.8)	연결로	소3-11	주차장-5	삭제
		27	1.5	0.0 (▼112.2)	0.0 (▼168.3)	산책로	소3-12	소3-13	삭제
		28	2.0	0.0 (▼54.2)	0.0 (▼108.4)	연결로	소3-11	산3-31	삭제
		29	2.0	0.0 (▼28.1)	0.0 (▼56.2)	연결로	산3-28	산3-31	삭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산책로	3	30	1.0	0.0 (▼24.8)	0.0 (▼24.8)	연결로	파고라 7	산3-31	삭제
		31	2.0	0.0 (▼73.7)	0.0 (▼147.4)	산책로	소3-11	소3-11	삭제
		32	1.5	0.0 (▼157.00)	0.0 (▼235.5)	산책로	소3-13	산3-33	삭제
		33	3.0	0.0 (▼11.4)	0.0 (▼34.2)	진입로	지구계경계	소3-11	삭제
		34	1.0	0.0 (▼66.9)	0.0 (▼66.9)	산책로	산3-31	산3-38	삭제
		35	2.0	0.0 (▼42.6)	0.0 (▼85.2)	연결로	산3-31	산3-38	삭제
		36	1.0	0.0 (▼68.3)	0.0 (▼68.3)	산책로	산3-39	소3-11	삭제
		37	1.5	0.0 (▼157.0)	0.0 (▼235.5)	산책로	산3-33	산3-39	삭제
		38	2.0	0.0 (▼26.5)	0.0 (▼53.0)	연결로	소3-11	초정	삭제
		39	4.0	0.0 (▼13.2)	0.0 (▼52.8)	진입로	지구계경계	광장-7	삭제
		40	1.0	0.0 (▼57.7)	0.0 (▼57.7)	연결로	산3-39	소3-14	삭제
		41	2.0	0.0 (▼23.9)	0.0 (▼47.8)	산책로	광장-8	산3-42	삭제
		42	2.0	0.0 (▼43.4)	0.0 (▼86.8)	산책로	소3-14	산3-47	삭제
		43	2.0	0.0 (▼19.7)	0.0 (▼39.4)	산책로	산3-42	산3-44	삭제
		44	2.0	0.0 (▼33.4)	0.0 (▼66.8)	연결로	소3-14	산3-47	삭제
		45	2.0	0.0 (▼12.7)	0.0 (▼25.4)	연결로	소3-14	산3-47	삭제
		46	2.0	0.0 (▼14.4)	0.0 (▼28.8)	연결로	산3-44	산3-44	삭제
		47	2.0	0.0 (▼46.7)	0.0 (▼93.4)	연결로	소3-1	소3-14	삭제
		48	1.5	0.0 (▼222.7)	0.0 (▼334.1)	산책로	산3-39	소3-16	삭제
		49	2.5	100.5	251.3	연결로	광장-9	소3-17	
		50	2.5	13.6	34.0	연결로	산3-49	주차장-6	
		51	2.5~6.0	149.6	516.8	연결로	주차장-6	소3-19	
		52	1.5	0.0 (▼77.0)	0.0 (▼115.5)	연결로	소3-18	광장-12	삭제
		53	2.5	0.0 (▼50.7)	0.0 (▼126.8)	연결로	소3-19	소3-1	삭제
		56	1.5	0.0 (▼159.0)	0.0 (▼238.5)	산책로	소3-16	소3-18	삭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산책로	3	57	1.5	0.0 (▼18.6)	0.0 (▼27.9)	연결로	광장-12	소3-22	삭제
		58	2.5	28.7	71.8	연결로	관리사무소-1	주차장-7	
		59	2.5	164.7	411.8	연결로	광장-13	광장-15	기정
		59	2.5	90 (▼74.7)	225 (▼186.8)	연결로	주차장-2	광장-14	변경
		60	2.5	14.6	36.5	연결로	주차장-7	산3-59	기정
		60	2.5	54 (▲39.4)	192.0 (▲155.5)	연결로	주차장-2	광장-13	변경
		61	2.5	0.0 (▼13.3)	0.0 (▼33.3)	연결로	주차장-7	산3-59	폐지
		62	1.5	0.0 (▼221.6)	0.0 (▼332.4)	산책로	소3-22	주차장-9	삭제
		63	3.0	163.6	490.8	연결로	지구계경계	주차장-1	
		69	2.5	30.7	76.7	연결로	주차장-1	광장-17	
		73	1.5	0.0 (▼340.7)	0.0 (▼511.0)	산책로	주차장-9	소3-27	삭제
		74	1.5	0.0 (▼9.8)	0.0 (▼14.7)	산책로	지구계경계	소3-27	삭제
		75	15.5	6.0	93.0	연결로	전기실	산3-76	
		76	4.0	82.0	328.0	연결로	산3-13	녹지	
		77	5.0~12.5	0.0 (▼6.4)	0.0 (▼56.0)	연결로	소3-6	다목적구장2	삭제
		78	2.5	0.0 (▼68.5)	0.0 (▼171.2)	연결로	소3-1	소3-6	삭제
		79	2.5	0.0 (▼65.0)	0.0 (▼162.5)	연결로	소3-1	소3-6	삭제
		80	2.6	22.5	58.5	연결로	소3-23	다목적전시관	
		81	4.9	9.2	45.0	연결로	소3-1	다목적전시관	
		82	2.0	21.9	44.0	연결로	광장1	지구계경계	
		90	2.0	677.9	1,403.0	산책로	광장18	임수동550-1 (테크로드)	
		91	3.3	74.0	235.0	산책로	주차장A	소3-44	
		92	1.8	29.8	55.0	산책로	산3-91	나루터전시관	
		93	1.8	9.3	17.0	산책로	산3-92	산3-9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산책로	3	94	1.8	29.3	54.0	산책로	나루터전시관	산3-91	
		95	1.8	9.2	17.0	산책로	산3-94	산3-91	
		96	1.8	10.5	19.0	산책로	산3-94	산3-98	
		97	1.8	8.3	15.0	산책로	산3-94	산3-98	
		98	2.8	56.9	159.0	산책로	산3-96	산3-96	
		99	1.5	0.0 (▼91.1)	0.0 (▼137.0)	산책로	지구계경계	소3-5	삭제
		100	2.0	4.5	9.0	연결로	산3-90	광장-21	
		101	2.5	390.2	1016.4	산책로	광장-21	지구계경계	
		102	1.8	24.1	43.5	산책로	광장-21	산3-103	
		103	1.8	107.5	193.6	산책로	산3-101	산3-101	
		104	1.8	138.0	257.2	산책로	산3-103	산3-101	
		105	2.0	1.5	3.0	연결로	산3-90	산3-101	
		106	2.0	1.5	3.0	연결로	산3-90	산3-101	
		107	2.0	3.4	8.5	연결로	전망데크	산3-101	
		108	3.0	21.0	73.4	연결로	산3-14	반려견놀이 터	신설

마.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치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			
총 계				295,118.00	3,926.59	6,294.44		441	기정
총 계				295,118.00	4,492.99	6,860.84		440	변경
시 설 지 계				132,372.24	3,926.59	6,294.44		460	기정
				117,686.81	4,492.99	6,860.84		440	변경
도 로 및 광 장	소 계			59,100.51					기정
	소 계			51,972.03					변경
		도로(소로)		22,864.50					기정
		도로(소로)		22,514.90					변경
		도로(산책로)		11,931.50					기정
		도로(산책로)		6,441.40					변경
	가-1	광장1		63.00					
	가-3	광장3		463.80					
	가-4	광장4		738.50					
	가-5	광장5		1,995.18					
	가-6	광장6		523.40					
	가-7	광장7		879.60					
	가-8	광장8		0.0 (▼379.60)					삭제
	가-9	광장9		1,185.30					
	가-11	광장11		1,003.60					기정
	가-11	광장11		534.16 (▼469.44)					변경
	가-12	광장12		5,987.76					
	가-13	광장13		191.00					
	가-14	광장14		8,695.92					기정
	가-14	광장14		8,256.18 (▼439.74)					변경
	가-17	광장17		832.06					
	가-21	광장18		379.31					
	가-22	광장19		119.00					
	가-23	광장20		52.00					
	가-24	광장21	임수동 535-2답	815.48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치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조 경 시 설	소 계			2,091.90	107.00	107.00		40	기정
	소 계			1,664.40	107.00	107.00		48	변경
	나-2	생태연못1		350.80					
	나-5	전통초화류화단		0.0 (▼427.50)					삭제
	나-6	연못(태극지)		715.00					
	나-7	아치형목교		36.00					
	나-8	초정		80.00	75.00	75.00		5	
	나-9	원두막		40.00	32.00	32.00		2	
	나-10	분수		192.60				1	
	나-15	바닥분수		155.00					
	나-16	거울연못		95.00					
	1	파고라						14	
	2	원형파고라						1	
	4	목재스탠드						13	
	5	생울타리터널						4	
	3	장파고라						1	신설
	35	정자						6	신설
	36	막구조						1	신설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치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				
휴 양 시 설	소 계			5,970.90				254	기정	
	소 계			1,085.00				233	변경	
	다-2	휴게소2		0.0 (▼48.00)					삭제	
	다-3	휴게소3		0.0 (▼48.00)					삭제	
	다-4	휴게소4		48.00						
	다-5	휴게소5		0.0 (▼48.00)					삭제	
	다-6	휴게소6		680.90						
	다-7	휴게소7		0.0 (▼48.00)					삭제	
	다-8	휴게소8		48.00						
	다-9	휴게소9		0.0 (▼48.00)					삭제	
	다-10	휴게소10		0.0 (▼48.00)					삭제	
	다-11	휴게소11		0.0 (▼48.00)					삭제	
	다-14	휴게소14		48.00						
	다-15	휴게소15		0.0 (▼48.00)					삭제	
	다-16	휴게마당		0.0 (▼184.00)					삭제	
	다-17	쉼터1		1,502.00					기정	
	다-17	쉼터1		30.70 (▼1471.3)					변경	
	다-18	쉼터2		1,502.00					기정	
	다-18	쉼터2		30.70 (▼1471.3)					변경	
	다-19	쉼터3		1,502.00					기정	
	다-19	쉼터3		30.70 (▼1471.3)					변경	
	다-20	전망데크	임수동 539입	72.0						
	다-21	휴게소21		48.00					신설	
	다-22	휴게소22		48.00					신설	
	6	등의자							76	기정
	6	등의자							102	변경
	7	평의자							96	기정
	7	평의자							49	변경
	8	좌대벽							13	
	9	돌의자							38	
	10	야외탁자							8	
	B	초가정자							3	
	25	파라솔							6	
	26	야외테이블							6	
	27	앉음벽							8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유 회 시 설	소 계			2,804.82	400.50	850.00		14	기정
	소 계			880.99	400.50	850.00		1	변경
	라-1	민속놀이 시설지		0.0 (▼808.70)					삭제
	라-2	놀이터1		1,595.62					기정
	라-2	놀이터1		480.49 (▼1,115.13)					변경
	라-5	수상레포츠 체험장		400.50	400.50	850.00	지상2층		
	11	그네						3	삭제
	12	널뛰기						6	삭제
	13	흔들놀이						4	삭제
	14	세줄타고 건너기						1	삭제
	16	조합놀이대						1	신설
운 동 시 설	소 계			30,529.07	200.31	262.56		16	기정
	소 계			28,329.07	766.71	828.96		22	변경
	마-1	야구장		2,304.00					
	마-2	축구장		9,204.00					
	마-3	다목적구장1		0.0 (▼810.00)					삭제
	마-4	다목적구장2		0.0 (▼3,650.00)					삭제
	마-5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778.70					
	마-6	로울러 스케이트장		4,640.87	111.81	111.81	R.C조 지상1층		
	마-8	궁도장		9,141.50	88.50	150.75		금오정 포함	
	마-9	테니스장		459.00					신설
	마-10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1801.00	566.40	566.40	철근콘크리 트		신설
	15	축구골대						2	
	17	농구대						2	
	18	궁도과녁						3	
	19	궁도판정소						1	
	20	포스트						8	
	37	운동시설						6	신설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교 양 시 설	소 계			8,239.46	1,651.41	3,007.04			기정
	소 계			8,138.46	1,651.41	3,007.04			변경
	바-1	야외무대		201.00					
	바-2	놀이마당		0.0 (▼167.00)					삭제
	바-3	전통민가		326.00	48.60	48.60	초가, 목조지상1층		
	바-4	헛간		20.00	15.00	15.00	초가, 목조지상1층		
	바-5	채원		65.00					
	바-6	물레방아간		35.00	15.00	15.00	초가, 목조지상1층		
	바-7	종각		169.00					
	바-8	유물전시관	임수동 377-4임	3,976.00	600	1,200	RC조 한식기와 지상1층		
	바-11	호국용사전공 조형물		667.68					
	바-14	곡간	진평동 766		5.63	5.63	초가, 목조지상1층		기정
	바-14	곡간	진평동 766	33.00 (▲33.00)	5.63	5.63	초가, 목조지상1층		변경
	바-15	헛간 1	진평동 766		3.58	3.58	초가, 목조지상1층		기정
	바-15	헛간 1	진평동 766	33.00 (▲33.00)	3.58	3.58	초가, 목조지상1층		변경
	바-16	전시장비 전시장		432.78					
	바-17	사이언스 체험관		1,630.00	845.04	1,600.67			
	바-18	동물농장		200.00					
	바-20	나루터전시관		350.00	118.56	118.56	지상1층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의 시 설	소 계			22,700.79	632.58	765.29		5	기정
	소 계			20,768.47	632.58	765.29		5	변경
	사-1	주차장1		7,604.83					
	사-2	주차장2		1,950.70					
	사-3	주차장3		2,159.34					
	사-4	주차장4		1,717.10					
	사-5	주차장5		690.00					
	사-6	주차장6		2,516.90					
	사-7	주차장7		2,577.90					
	사-9	주차장9		0.0 (▼1,894.20)					삭제
	사-10	공중화장실1		43.20	43.20	43.20	RC조1동 지상1층		
	사-11	공중화장실2		45.00	43.20	86.40	RC조1동 지상2층		
	사-12	공중화장실3		45.00	21.78	21.78	한옥초가 지상1층		
	사-13	공중화장실4		45.00	43.20	86.40	벽돌밋파이프조 지상2층		
	사-17	공중화장실5		45.00	21.78	21.78	한옥초가 지상1층		
	사-18	전통찻집1 (휴게음식점)	진평동 766	100.00	34.02	34.02	초가, 목조지상1층		
	사-19	전통찻집2 (휴게음식점)	진평동 766	120.00	37.26	37.26	초가, 목조지상1층		
	사-20	풍차 (휴게음식점)	진평동 766	45.30	45.30	77.99	콘크리트기초, 철골구조, 목재마감, 지상2층		
	사-21	주차장10		623.01					
	사-22	매점 및 화장실		201.78	177.56	191.18	RC조1동 지상1층	1	
	사-23	공중화장실6		251.53	165.28	165.28			기정
	사-23	공중화장실6		238.41 (▼13.12)					변경
	사-25	주차장12		0.0 (▼25.00)					삭제
	22	음수대A						1	
	23	음수대B						1	
	24	공중전화						2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면 적		규모	시설물 (개소)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관 리 시 설	소 계			934.79	934.79	1302.55		131	
	아-1	관리사무소		274.92	274.92	512.28	R.C조1동 지상1층 지하1층		
	아-2	전기실		205.37	205.37	205.37			
	25	깃대봉						11	
	26	볼라드						20	
	27	웬스						77	
	28	쓰레기 분리수거대						10	
	29	자전거보관대						4	
	30	종합안내판							
	31	주차표지판						1	
	32	국기계양대						7	
	33	베너							
	34	주차매표소						1	
	아-3	창고		94.50	94.50	94.50			
	아-4	창고		360.00	360.00	490.40			
그 밖의 시설	소 계								기정
	소 계			3913.6					변경
	자-1	동물놀이터		3913.6					신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162,745.76					기정
	소 계			177,431.19					변경
	녹지	녹지		161,774.46					기정
	녹지	녹지		176,459.89					변경
	철담	철담		971.30					

의성군 공고 제2025-1574호

의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 일원의 의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칭 :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 면적 : 13,845㎡

나. 사업시행 면적 : 1,54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의성군수

나.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05.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10. 27. ~ 2025. 11. 11.까지 (14일 이상, 국·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다. 관계서류 : 개제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054-830-63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주 소	성 명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필지		14,792	13,845				
1	봉양면	분토리	924	창	1,250	1,250	-	의성군		
2	봉양면	분토리	928	대	13,289	12,342	-	의성군		
3	봉양면	분토리	928-1	대	253	253	-	농림축산 식품부		

영양군 공고 제2025-828호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영 양 군 수

1. 사업의 종류와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명 칭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변경)

- 사업면적 : 170,633㎡
- 변경사유 : 현장여건에 따른 발전기 기초변경, 전기실 크기 변경

4.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9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주)에이더블유포 대표 김 수 연
- 주 소 :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3층

6. 열람 및 의견청취

- 기 간 : 2025. 10. 27. ~ 2025. 11. 10.
- 장 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22,865,809	170,633						
1	영양읍 무창리	산1	임	9,774,568	95,322	국 (산림청)	-				
2	영양읍 무창리	산1-45	임	1,218,200	10,868	국 (산림청)	-				
3	영양읍 무창리	산1-53	임	365	147	국 (산림청)	-				
4	영양읍 기산리	산11-1	임	4,360,534	25,701	국 (산림청)	-				
5	영양읍 기산리	산11-7	임	144	67	국 (산림청)	-				
6	영양읍 기산리	산6-1	임	1,564,458	11,154	국 (산림청)	-				
7	영양읍 기산리	산6-3	임	4,959	374	영양군	-				
8	영양읍 무학리	산12	임	1,342,185	19,819	국 (산림청)	-				
9	수비면 송하리	산76	임	4,600,396	7,181	국 (산림청)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54-680-63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5. 10. 21.(화) APEC 현장점검회의의 시 -

관리번호	지시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훈시	○ APEC 정상회의 개최 대비 막바지 점검 철저 - 현장에서 실국별 소관사항을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할 것. ○ APEC 정상회의 이후 조형물 등 유지·활용 방안 - 경주시와 함께 고민하여 마련할 것. ○ 경주시,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트 APEC을 충분히 준비할 것.	전 부서